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
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**

2023. 8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·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,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제명 변경)

-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강화(안 제4조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·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,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본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였고,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으며,
 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, 입주자등의 책무를 강화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관리 노동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·폭행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사항을 강화하였고,
 - 안 제7조에서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,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등 의 “갑질”이 증가하고 그 행태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, 본 조례의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‘경비원’에서 ‘관리 노동자’로 넓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, 구청장·입주자등의 책무 및 시정권고 사항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
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205
번 호	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 : 이순우、이성수、이예찬
、우경란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·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,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제명 변경)
- 나.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다.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강화(안 제4조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8. 10.~ 2023. 8. 1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
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
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경비원의 인권 보호”를 “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”로, “경비
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”을 “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
고용환경 개선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
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(종전
의 제3호)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 한다.

1. “관리 노동자”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
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, 관리사무소 직원, 경비원, 미화원 등 공동주
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입주자등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
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

3. “주택관리업자등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·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, “증진정책”을 “증진을 위한 시책”으로, “국가 및”을 “국가 또는 다른”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)”를 “(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비원은”을 “관리 노동자는”으로, “입주자 등”을 “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, 폭행,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비원이”를 “관리 노동자가”로, “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”을 “법률지원 연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

로 한다.

1.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
3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
제6조제1항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·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및 공동주택관리업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,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“경비원”을 “관리 노동자”로, “입주자 등”을 “입주자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경비원”이란 「<u>공동주택관 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<u>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 2. “입주자 등”이란 <u>공동주택 입 주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</u>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</u> ---- ----- --- <u>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 과 고용환경 개선</u>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관리 노동자”란 「<u>공동주택 관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 소장, 관리사무소 직원, 경비 원,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 2. “입주자등”이란 「<u>공동주택관 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<u>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를 말한다.</u>

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
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
를 말한다.

<신 설>

3. “기본시설”이란 경비원의 근
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
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
다)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
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
장”이라 한다)은 경비원의 인권
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
여야 하고, 관련 시책을 발굴하
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
다.

<신 설>

3. “주택관리업자등”이란 「공동
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
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
경비·청소 용역업체 등으로
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
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
말한다.

4. ----- 관리 노동자-----

-----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

----- 관리 노동자-----

-----.

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
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
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
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
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

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)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본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

다.

③ ----- 관리 노동자-----
---- 증진을 위한 시책-----
----- 국가 또는 다른 -----
--.

제4조(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) ① 관리 노동자는

-----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-----

-----.

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, 폭행,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지원) ----- 관리 노동자-----

-----.

1.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

신청하는 경우 지원

2.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

3.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
4.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 및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① 구청

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

2. 관리 노동자가 -----

----- 법률지원 연계

3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
4. ----- 관리 노동자-----

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-----
----- 관리 노동자-----

---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·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및 공동주택관리업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,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① 구청

<u>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 (생 략) 제8조(포상) 구청장은 <u>경비원의</u>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<u>입주자</u>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	<u>장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,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8조(포상) ----- <u>관리 노동자</u>----- ----- <u>입주자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